

경쟁법학회『경제법판례연구모임』제3차 세미나 개최

경쟁법학회(회장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의 경제법판례연구모임은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행위의 경쟁제한성”이라는 주제로 9월 1일(19:15) 서초동 (구)사법연구원에서 교수, 법조인 등 관계전문가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인 거래거절사건은 공정위 2001. 4. 12. 2001경총0389 의결인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사건이고, 제2주제인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행위사건은 공정위 2000. 2. 24. 2002단체0273 의결인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관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

1. 포항제철은 현대하이스코(주)가 1999. 2. 냉연강판공장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1997년, 1998년, 2000년, 2001년 등 수 차례에 걸쳐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냉연강판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해 전혀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제도의 보완과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사대회 참석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1일 휴업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참석서명은 물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참사유서를 받기로 결의하여 회원 소속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제1주제 발표자인 홍명수 박사(서울대 법대)는 포항종합제철(주)의 부당한 거래거절사건에서 우선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이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별 시장획정이 거래의 지역적 전환가능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유력한 열연코일 생산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오히려 국내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전환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별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이

와 같은 가격의 차이가 그밖에 장기공급계약의 결과인지, 구매전환과 관련하여 전매를 제한하는 또 다른 요소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현대하이스코(주)가 현대자동차(주)의 계열회사로서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수직계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포항종합제철(주)의 공급거절의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제2주제 발표자인 서정 판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는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취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치가 과연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외국 유사사례와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야기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사업자들의 합의에 의한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을,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의 거래거절은 동 법 제26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경우에 따라서 의료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제26조제1항제3호를 폐지하고 제23조제1항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공동의 거래거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